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76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한지아 · 정성국 · 이달희
우재준 · 박정하 · 진종오
김형동 · 서일준 · 박성훈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을 “다음”으로, “1개월”을 “14일”로, “예고 하여야”를 “예고하면서 그 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을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변경 1개월 이전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 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u>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u> <u>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u> <u>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u> <u>하여야</u>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 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다음</u> ----- ----- ----- <u>14일</u> ----- ----- <u>예고</u> <u>하면서 그 기간 동안 관계 기</u> <u>관과의 협의를 거쳐야</u> ----- ----- ----- ----- <u>. 이 경우 1군</u> <u>임시마약류로 지정할만한 근거</u> <u>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u> <u>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야</u> <u>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④ ----- ----- -----
1. ~ 4. (생 략) 5. <u>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u> 임 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 고한 임시마약류(이하 “ <u>예고임</u> <u>시마약류</u> ”라 한다)에 대한 효	

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
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
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
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
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
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신설>

-----한다. <단서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항은 변경 1개월 이
전부터 공고하여야 한다.